

것입니다.

바. 조례로 규정한 설립·설습·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육과정이 학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고, 법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도·감독권을 위탁한 자동차학원에 대한 시설·설비교구기준을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 기타 의회에 표기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세안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98. 7.10.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8. 7.1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세안사유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 2.20 대통령령 제15650호)에 따라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 학원 설립 금지 조장을 삭제하고, 학원 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 교육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3. 주요골자

○ 도로원표 중심 반지름 5km내에서 보통교과 및 정원증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건물내 동일 교육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부재내 각 단위 교습시간 사이에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할 교육장은 동록된 학원 및 강사명단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반기별로 통보하도록 함.

○ 또한 생활 편의시설내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를 330㎡ 이내로 규정하고 [별표1], 설립·설습·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육과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별

표1]의 교육과정에 일치시키고, [별표2]의 자동차 운전학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4.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교육위원회는 '98. 5. 6일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영수와 7인)의 심의를 통해 동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을 교습소와 학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5조 제3항으로 신설한 "유아에 대한 1일 총 교습시간은 180분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의 2(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관할 교육장은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위하여 등록된 학원 및 강사의 명단을 반기별로 연합회에 통보한다를 신설함. 또한 부칙 제1항 중 "공포후 2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 2.20 대통령령 제15650호)에 따라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 학원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학원 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 교육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 다음은 각 개정 조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4조 제1항을 보통교과학원 및 고시 학원을 인구집중유발 시설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 2.20)시 근거 규정인 제3조 제5호 나목이 삭제되어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동일 건물내에서는 동일 교육과정

학원의 등록 또는 교습소의 신고를 금지했던 제4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행정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율경쟁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 및 행정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여 오던 기득권층의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제5조 제2항에 부제(1일 기준으로 교습할 수 있는 “반”)내 각 단위교습시간 사이에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시 학원에서 휴식시간을 두지 않고 실세적으로 수업이 되지 않는 편도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제8조의 2(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를 신설하여 관할 교육장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를 위하여 등록된 학원 및 강사의 명단을 반기별로 연합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원시설의 규모를 정한 [별표 1]의 비교란에 “생활편익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3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마다 목에 보습학원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규정 제6조에 정한 단지안의 시설로 보습학원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보습학원이 생활편익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고, “보습학원이 이용시간과 수용인원의 상한선 등 적정기준 등이 따로 정해진 경우라면 유사한 시설로 인정(주기 58501-783, '96. 5. 3)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교습시간이 동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용인원의 상한 규정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강의실 규모 또한 330㎡로 상한을 정해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실습·실습·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

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별표2]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 '97.1.1부터 시행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에 의거 기존의 운전학원중 국가운전면허시험을 위탁받아 자체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 하며 서울시내에는 현재 약 20개의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기능교습장 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지의 형태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 교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부지형태에 따라 코스의 연장거리(700미터), 차로수(교차로 포함), 기어변속 코스거리(70미터)에 한하여 안전한 기능 교습 환경이 확보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기능교습코스를 연결식으로 설치하면 일반자동차운전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학원(운전학원)시설중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6.3.20일 전문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별표2]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존학원의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의 시설·설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계속 운영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설

비 등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 3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96. 3.20일 조례 개정시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 계속 운영 가능도록 한 자동차운전학원들을 '97.1.1일부터 전면 시행된 면허시험제도에 맞도록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유도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판단되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2항을 충족시키는 학원을 등시행령 제49조의 3에 의해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현재 시행되는 시험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와 부탁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미 등록된 학원을 현행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폐지시키는 것보다 현재 운영되는 운전면허 시험체계에 맞도록 시설·설비 보완을 유도하는 것은 기존의 등록학원의 권익을 침해 한다기 보다 권익보호에 충실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 현재 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부지의 형태상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15]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원들을 부지 형태에 맞게 운영하되 현재 시행되는 시험체계에 맞도록 시설·설비를 유도하는 것은 26개밖에 안되는 서울시내의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포함)현황을 고려해 볼 때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체계가 '97. 1.1일부터 단절식에서 연결식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학원의 시설·설비기준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와서 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③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은 수도권경비계획법시행령개정 ('98. 2.20 대통령령 제15650호)에 따라 조례로 세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 학원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학원 설립을 세한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경비 등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이 엿보이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일건물내 동일 교습과정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의 신고해제에 따른 기존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들의 반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습학원을 생활편의시설로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자들이 이용시간·수용 인원 상한선 등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의 의뢰로 개정되는 조례 제3조제3항의 [별표 2] 시설·설비기준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 2,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2항 제1호·제2호, 동시행령 49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4의 규정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제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동 개정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단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